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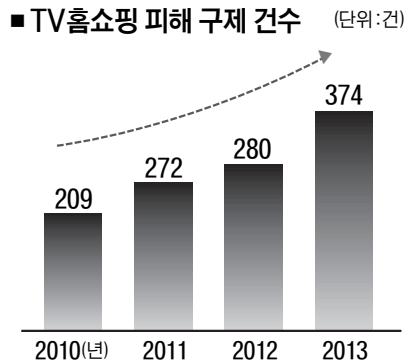
TV홈쇼핑 광고 피해사례 ‘보험’이 최다

광고와 계약 내용 다르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많아

의류>정수기 대어>여행 순

소비자원 규제 강화 건의 예정



“열나고 기침감기 코감기에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

박모씨는 작년 7월 TV홈쇼핑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아이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아이가 감기가 들어 진료를 받은 후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급성기관지염일 때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되어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

김모씨는 TV홈쇼핑을 광고를 보고 통해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갱신 시점인 5년이 지나 보험사가 광고와는 달리 보험료를 60% 인상하자 보험사에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달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했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며 무성으로 일관했다.

최근 박씨와 김씨 처럼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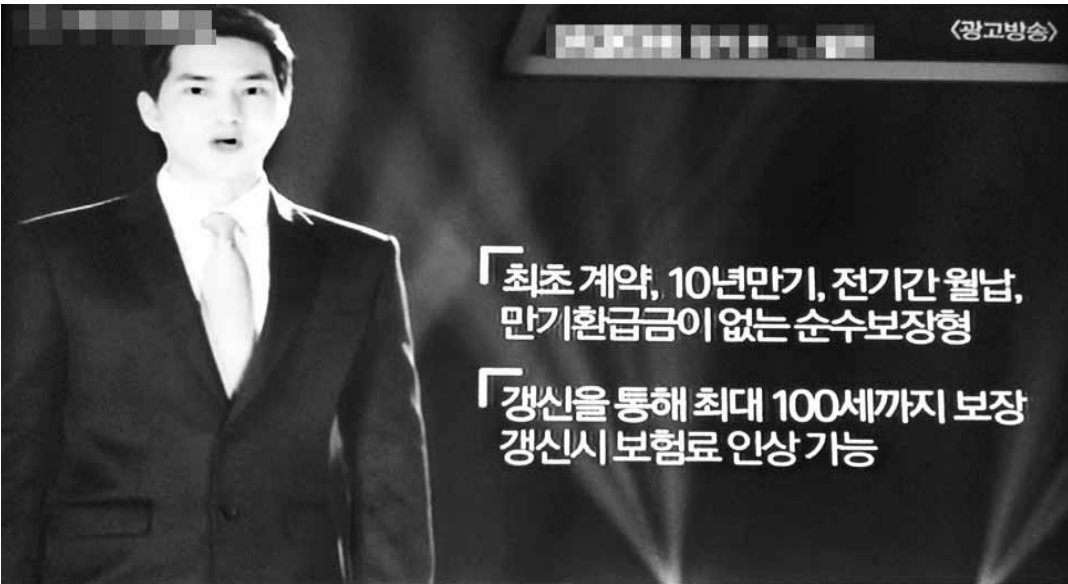
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44.7%) 피해가 가장 컸고,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16.8%), 광고 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의류(6.0%), 정수기 대어(5.4%), 여행(4.6%), 스마트폰(4.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 보험으로 전체 보험 중 84.6%를 차지했다.



최근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 등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특정회사와 관련 없음.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 등 때문에 홈쇼

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의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전띠 미착용사고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보험약관 개정될수도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총 4500만원이었다. 박씨는 그해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한 박씨는 흥국화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을 내세웠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의 과실 아닌 고의로 상해를 입었고, 표준약관도 유효하다는 판단이 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분쟁 발생 대부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7700건 분석

환경부 내달까지 층간소음예방공모전

층간 소음 분쟁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3월 개소한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접수한 3만3311건의 민원 상담과 7700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7700건에 달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 원인을 분석해보니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659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망치질(353건, 4.5%), 가구 끌거나 짚는 행위(225건, 2.9%),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198건, 2.6%)이 뒤를 이었다.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6116건, 78.7%)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립주택(858건, 11%), 다세대·주상복합(796건, 10.3%)이 뒤따랐다.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과 해결사례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경부와 공단은 '층간소음 예방홍보 공모

전'을 개최한다.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저감)사례 ▲ 포스터·웹툰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분돼 진행 된다.

층간소음 예방 또는 분쟁 해결(저감)사례 부문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관리사무소 포함)가 지역이나 해당 공동주택의 해결 우수사례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상 교육사례 부문에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펼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조용한 공동체 및 저감방안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한 포스터·웹툰 부문에는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공모작품과 참가신청서 등을 10월31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응모해도 된다.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